

## II. 정정보도청구사례

제주 4·3 사건과 관련,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7. 15.자 판결 (97가합15722)

서울고등법원 2000. 1. 20.자 판결 (98나44705)

###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0년 1월 20일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인 이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망 이승만과 그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제반 진상규명 및 역사적 평가작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진상을 국민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도하였다고 판단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당시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아무런 자료도 없이 추측을 과장보도한 것이며, 진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계엄의 적법성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보도내용이 사실의 적시나 의견의 표명이나 구별기준은 단순히 사용된 구절의 용어만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서 보도되었는가 하는 보도내용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며, “피고가 계엄법 제정 이전 발령된 이 사건 계엄이 불법적일 것이라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불법이라고 보도한 점, 일제시대에 시행되던 계엄령이 이 사건 계엄 선포시까지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는 점,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관한 가치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곤란한 점, 공인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라는 공적인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고 보도한 것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논리의 비약이 있고, 다른 의견을 균형있게 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할 뿐이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이 1997년 4월 1일자에 『4·3계엄령은 불법』, 『이승만 정권 - 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하로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이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되었고,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도 피고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승

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 1심 판결문

사건 : 97가합15722 정정보도등

원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영

피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권 근 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명

업무담당변호사 이영대, 김대호

변론종결 : 1998. 6. 3.

주문 :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간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의 제3면 기사게재부분 우측 하단의 4각형 테두리 안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그 위쪽에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출고딕체 3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는 정정보도내용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한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1997. 4. 1.자 한겨레신문 제3면에 게재된 「4·3 계엄령은 불법」과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각 제목 하의 각 기사내용에 관하여 이 판결 송달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활자 크기로, 내용은 본문활자 크기로 3단에 걸쳐 게재하라.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 없는 사실들이다.

가. 원고는 이승만 전 대통령(1965. 7. 19. 사망)의 양자(1961. 11. 13. 입양신고)이고, 피고는 '한겨레'라는 이름의 전국 일간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7. 4. 1.자 한겨레신문 제3면에 "4·3계엄령은 불법"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1기사 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와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2기사 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그 소속 허 기자의 명의로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다. 위 각 기사는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정부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령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다룬 기사인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48. 11. 17. 대통령령 제31호로서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지구를 합위지경으

로 정하고 위 영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하며,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제주도 지역에 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였었다.

##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신문사로 인하여 원고 자신과 그의 양부인 망 이승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줄인다)에 의하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사실 보도 후 6월내에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정간법에 의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뿐,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정정보도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에서는 위 중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정간법에 의한 중재 및 반론보도청구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는 손해배상청구만이 해당되는 것이라거나,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항쟁하나,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터이고, 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중에서 ‘사죄광고’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에의 게재,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시키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처분 등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 이승만의 양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본안심사에서 가릴 문제이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 본안에 관하여 살핀다.

## 3. 명예훼손의 성립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일제시대에 칙령에 의하여 조선에 시행되던 법률로서 ‘계엄령’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제헌헌법 제정 후에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여전히 위 계엄령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헌법과 계엄령에 근거하여 발령된 이 사건 계엄은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계엄이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고, 이로써 위 이승만과 그의 양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식민지시대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공포되었던 계엄령은 그

정당성이 없는 데다가, 해방 후에는 미군정법령 제11호와 제21호의 취지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제헌헌법은 계엄제도를 규정하지는 하였으며, 정작 그 시행법률인 계엄법은 1949. 11. 24.에야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 제정 이전인 1948. 11. 17. 선포된 이 사건 계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역사적 평가의 차원에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룬다.

#### 나. 판단

##### (1) 이 사건 계엄의 근거

(가)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인 이 사건 계엄의 법적 근거 여하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은 공지의 사실 또는 현저한 사실들이다.

① 일제는 대정 2년(1913년) 9월경 칙령 제283조로 ‘조선에 시행하는 법률에 관한 건’을 재가하고 공포하였는데, 위 ‘조선에 시행할 법률’ 중에는 계엄령(명치 15년 8. 5. 태정관포고 제36호, 명치 19년 칙령 제74호로 개정, 이하 ‘계엄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계엄령은 전시사변에 있어 병비로써 전국 또는 일지방을 경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그에 의하면 계엄은 원칙적으로 태정관(조선총독)이 포고하도록 되어 있고, 임전지경의 계엄에서는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 중 군사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지역의 사령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위지경의 계엄에서는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그 지역의 사령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② 8·15 해방후 미군정은 1945. 10. 9. 미군정법령 제11호를 공포하였는 바, 그 제1조(특별법의 폐지)는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지역에서 조선인민과 그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 및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다음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및 명령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다음,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의 법령들을 열거하였는데, 위 계엄령은 이와 같이 폐지되는 법령으로 열거되지 않는 아니하였다.

한편 위 미군정법령의 제2조(일반법령의 폐지)는 ‘기타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내지 명령으로서 그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가져오는 것은 이를 전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③ 또한 1945. 11. 2. 미군정법령 제21호의 제1조(법률의 존속)는 ‘모든 법률 또한 조선 정부가 발포하고 법률적 효력을 가진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 8. 9. 실행 중인 것은 그동안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전효력으로 이를 존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④ 그 후 1948. 7. 17. 공포된 제헌헌법은 제64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2조 제6호에서 계엄안, 해엄안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한편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법령의 입법취지에다가, 일반적으로 계엄제도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대의 권력

하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전적인 국가긴급권의 한 형태라는 점, 제헌헌법 이래의 우리 헌법도 위와 같은 긴박한 국가비상사태를 예정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엄을 국가긴급권의 하나로써 인정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제시대 하에서 우리나라에 시행되던 ‘계엄령’은 해방 이후에 미군정법령 제11호 제1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고, 그 제2조가 규정한 대로 종족·국적·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가져오는 법률로서 폐지되어야 할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계엄령’은 해방 후에는 위 미군정법령 제21호 제1조에 의하여, 또한 제헌헌법 제정 후에는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여전히 유효한 법률로서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위 헌법에 의하여 계엄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 되고, 계엄안 또는 해엄안에 관한 사항이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는 한도 내에서 위 일제시대의 계엄령은 그 적용이 없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은 헌법상의 계엄선포권자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위 계엄령에 근거하여 선포한 것이므로 일응 그 법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 (2) 명예훼손의 성립

(가)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 기사를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제목과 전문의 내용, 배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사건 계엄선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응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기사는 제목에서 「“4·3계엄령은 불법”」, 「법제정 1년 앞서 48년 선포 “효력없어”」, 「정부문서기록 보존소서 관련문건 발굴」이라고 기재한 다음, ‘...제주 도민에 대한 대량학살의 법적 근거로 알려진 계엄령은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관련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 정권은 계엄법을 제정하기 전인 48년 11월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계엄법이 제정된 49년 11월 24일 보다 앞서 공포한 이 계엄령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등으로 기재하고, 소외 최병모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여 ‘제헌헌법에 계엄선포를 법률에 위임했는데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 ‘당시 진압과정의 불법성과 국가권력의 전단행위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도하였고, 이 사건 제2기사는 제목에서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고 기재한 다음 ‘...제주 4·3항쟁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 아래 불법적으로 공포된 계엄령을 근거로 하여 무차별 살상과 함께 진압됐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상당수 도민들은...방화나 학살 등 무차별 초도화작전이 일어난 것도 그나마 합법성을 띤 계엄령이 공포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인식해 왔다’는 등으로 기재하여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기사들은 일반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계엄선포 당시는 우리나라

에 계엄에 관한 법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건 계엄을 법적 근거 없이, 국무회의의 의결만을 거친 후 임의로 선포하였으며, 그가 계엄선포라는 막중한 국가권력작용을 ‘마음대로 행’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관련문서의 발굴에 의하여 새삼 밝혀지게 된 것처럼 이해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허 기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주관적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계엄의 합법성 논란에 관한 순수한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의 문제를 넘어, 이 사건 계엄 당시의 근거법규 여하 즉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 이승만과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 또는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주 4·3사건에 관하여는 그 사건의 원인 및 경위, 사건의 전체적인 성격, 계엄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학계나 정계에서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사실, 이외에 이 사건 계엄선포 자체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도 관련법규의 해석 여하와 논자의 가치관에 따라 계엄선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이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집는다거나,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오히려 피고로서는 4·3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기사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사실의 확인과 기사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인하여 망 이승만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상의 책임이 있다.

###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도 진실한 것이거나,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 하여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의 기준

무릇, 신문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바, 여기에서 취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타인의 판단에 기한 정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 하여 불법행위의 귀책사유를 결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 자료와 사람들을 두루 취재하는 등 필요하고도 상당한 진실확인작업을 다한 연후에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보도기관이 과장 또는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다.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언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주 4·3사건의 발생원인, 이 사건 계엄선포 및 사태의 진압경위 기타 4·3사건과 관련한 제반 진상규명 및 역사적 평가작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름대로는 그 진상의 일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기사보도에 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라.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

그러나 이 사건 기사들에 의하여 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사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 마. 상당한 이유 여하

다음 피고가 위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터이기는 하나, 특히 이 사건 계엄선포의 법적 근거 내지 합법성에 관하여는 일응 그 계엄선포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일부에서 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사실여부를 두루 문의하고, 상이한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들에 대하여 성실히 취재하고 확인의 노력을 다한 연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된 것인지 여부, 특히 계엄선포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측의 주장 및 근거자료, 나아가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는 확인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4·3계엄의 합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측만을 취재하고 그 주장내용만을 주로 근거로 삼거나 이에 과장 내지 각색을 더하여 기사화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 또는 그 소속 담당기자가 위 기사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위법성조각항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4.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그렇다면, 피고는 망 이승만과 그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정정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제3면 기사게재부분 우측 하단의 4각형 테두리 안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그 위쪽으로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출고딕체 3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는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내용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크기의 활자로 기재한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사실만을 단정적으로 기술한 내용의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나, 게재를 명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원문보도와의 연관성 및 독자들에게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기재, 그리고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15.

재판장 판사 김 길 중

판사 문 광 섭

판사 조 양 희

#### 2심 판결문

사건 : 98나44705 정정보도등

원고, 피항소인 :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진 우

피고, 항소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최 학 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김대호

변론종결 : 1999. 12. 16.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7. 15. 선고 97가합15722 판결

주문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간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의 제3면 기사게재부분 우측 하단의 4각형 테두리 안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그 위쪽에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출고딕체 3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는 정정보도내용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한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1997. 4. 1.자 한겨레신문 제3면에 게재된 「4·3 계엄령은 불법」과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각 제목 하의 각 기사내용에 관하여 이 판결 송달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활자 크기로, 내용은 본문활자 크기로 3단에 걸쳐 게재하라.(원고는 당시에 이르러 별지 제2목록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이승만 전 대통령(1965. 7. 19. 사망)의 양자(1961. 11. 13. 입양신고)이고, 피고는 '한겨레'라는 이름의 전국 일간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7. 4. 1.자 한겨레신문 제3면에 "4·3계엄령은 불법"이라는 제목 하에 제1심 판결의 별지 제1기사 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와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 하에 제1심 판결의 별지 제2기사 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그 소속 허 기자의 명의로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다. 위 각 기사는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정부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령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다룬 기사인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48. 11. 17. 대통령령 제31호로서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지구를 합위지경으로 정하고 위 영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하며,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제주도 지역에 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였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신문사로 인하여 원고 자신과 그의 양부인 망 이승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줄인다)에 의하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사실보도 후 6월내에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정간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편 동법 제19조 제2항에서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간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나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정정보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정간법에 의한 중재 및 반론보도청구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는 손해배상청구만이 해당되는 것이라거나,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항쟁하나,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중에서 ‘사죄광고’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에의 게재,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시키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처분 등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 이승만의 양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본안심사에서 가릴 문제이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공지의 사실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들이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원의 법제처 및 국방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이다.

(1) 일제는 대정 2년(1913년) 9월경 칙령 제283조로 ‘조선에서시행하는법률에관한건’을 제가하고 공포하였는데, 위 ‘조선에서행하는법률에관한건’ 중에는 계엄령(명치 15년 8. 5. 태정관포고 제36호, 명치 19년 칙령 제74호로 개정, 이하 ‘계엄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계엄령은 전시사변에 있어 병비로써 전국 또는 일지방을 경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그에 의하면 계엄은 원칙적으로 태정관(조선총독)이 포고하도록 되어 있고, 임전지경의 계엄에서는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 중 군사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지역의 사령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위지경의 계엄에서는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그 지역의 사령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2) 8·15 해방후 미군정은 1945. 10. 9. 미군정법령 제11호를 공포하였는 바, 그 제1조(특별법의 폐지)는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지역에서 조선인민과 그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 및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다음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및 명령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다음,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의 법령들을 열거하였는데, 위 계엄령은 이와 같이 폐지되는 법령으로 열거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위 미군정법령의 제2조(일반법령의 폐지)는 ‘기타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내지 명령으로서 그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가져오는 것은 이를 전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또한 1945. 11. 2. 미군정법령 제21호의 제1조(법률의 존속)는 ‘모든 법률 또한 조선구정부가 발표하고 법률적 효력을 가진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 8. 9. 실행 중인 것은 그동안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전효력으로 이를 존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그 후 1948. 7. 17. 공포된 제헌헌법은 제64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2조 제6호에서 계엄안, 해엄안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한편 제99조에서는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5) 계엄법은 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다.

(6) 제주 4·3사건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던 중 제주도의회가 1992. 3. 20.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993. 10.과 1996. 11. 2차례에 걸쳐 국회에 국회내 ‘4·3 특별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청원하자, 국회의원 154명이 찬성 서명을 하여 1996. 12. 17. ‘제주도 4·3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함으로써 제주 4·3 사건이 사회문제화되었다.

(7) 1997. 4.경 제주도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주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도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계엄에 관한 피고의 기사가 보도되자 법제처의 법제관이 이 사건 계엄이 적법하다는 개인적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내부보고를 한 바 있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1997. 4. 4.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고, 국방부는 ‘사단법인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이 사건 계엄이 제헌헌법 제64조, 제100조에 따라 일제하에서 시행되던 계엄령을 적용하여 발령된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기도 하였으며, 육군본부가 작성한 ‘계엄사’라는 책자에는 “일본계엄령이 해방후 미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하여 미군정하의 한국에 적용되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정부에서 이 사건 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는 없었다.

(9) 국회는 1999. 12. 16.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통과시켰는

데, 위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시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엄의 적법성에 관한 보도내용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제시대에 칙령에 의하여 조선에 시행되던 법률로서 '계엄령'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제헌헌법 제정 후에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여전히 위 계엄령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헌법과 계엄령에 근거하여 발령된 이 사건 계엄은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계엄이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고, 이로써 위 이승만과 그의 양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별지 제2 목록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한겨레신문에 게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식민지시대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공포되었던 계엄령은 그 정당성이 없는 데다가, 해방 후에는 위 계엄령이 미군정법령 제11호와 제21호의 취지에 따라 폐지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헌헌법 제100조에 저촉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제헌헌법은 계엄제도를 규정하지는 하였으며, 정작 그 시행법률인 계엄법은 1949. 11. 24.에야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 제정 이전인 1948. 11. 17. 선포된 이 사건 계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역사적 평가의 차원에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룬다.

(3) 판단

신문의 보도내용이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이 있는 경우 이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져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2683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 1693 판결 참조).

어떠한 보도내용이 사실의 적시냐 의견의 표명이냐의 구별기준은 단순히 사용된 구절의 용어만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서 그 보도가 되었는가 하는 보도내용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기사 전체의 내용, 문맥, 전달방법,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신분이 공인인가 사인인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최근 총무처 산하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서 나온 제주도지구 계엄선포 관련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 정권은 계엄법을 제정하기 전인 48년 11월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사실을 보

도한 후 ‘그러나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돼 있어 계엄법이 제정된 49년 11월 24일 보다 앞서 공포한 이 계엄령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엄이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4·3 연구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기사에서는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제주 4·3사건 당시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도하였는 바, 피고가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일이 계엄법 시행일 이전인 사실을 확인한 후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령된 이 사건 계엄이 불법적일 것이라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고 보도한 점, 일제시대에 시행되던 계엄령이 이 사건 계엄 선포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군정법령 및 제헌헌법의 각 해당조항에 대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점, 위 계엄령이 이 사건 계엄 선포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제헌헌법 및 관계법령의 해석문제이고, 이는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관한 가치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곤란한 점,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이 공인인 이승만 전대통령의 이 사건 계엄선포라는 공적인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고 보도한 것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논리의 비약이 있고, 다른 의견을 균형있게 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소간의 과장이 있는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고 보도한 것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기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판단

#### (1) 명예훼손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 기사에서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하에, ‘제주 4·3항쟁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 아래 불법적으로 공포된 계엄령을 근거로 하여 무차별 살상과 함께 진압됐다’, ‘제주도에선 당시 군경토벌작전 과정에서 최소 2만명에서 최대 8만명까지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벌대는 중산간마을 초토화작전을 전개하면서 팔순 노인에서부터 서너살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러’라고 보도하여 마치 제주4·3사건 당시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인하여 망 이승만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2)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도 진실한 것이거나,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 하여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언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주 4·3사건의 발생원인, 이 사건 계엄선포 및 사태의 진압경위 기타 4·3사건과 관련한 제반 진상규명 및 역사적 평가작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름대로는 그 진상의 일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기사보도에 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제주4·3사건 당시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공모’와 ‘의도적인 양민학살’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추측을 과장 보도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또는 그 소속 담당기자가 위 기사 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바, 그렇다면 위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3)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따라서, 피고는 망 이승만과 그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위 기사를 정정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제3면 기사게재부분 우측 하단의 4각형 테두리 안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그 위쪽으로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출고딕체 3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는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내용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크기의 활자로 기재한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보도내용에 관하여 별지 제2 목록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나, 게재를 명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원문보도와 연관성, 독자들에게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기재의 필요성,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 20.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박 순 성

판사 최 규 홍

